

“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



한국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KOREA RESOURCE-RECYCLING ENERGY MUTUAL-AID ASSOCIATION

수 신 전 조합원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메일 송부 병행문서]

참 조 영업부서장

제 목 「부여군 재활용 방치폐기물 처리」 용역입찰 전환 알림



1. 재활용 방치폐기물 고통분담에 적극 참여해주신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조합에서는 부여군 재활용 방치폐기물을 연내 처리코자 17개사 24,700톤 처리 가능량을 확보하였으나 「지방계약법」 등으로 인해 참여 업체 전체가 아닌 6개 업체 컨소시엄으로 용역 입찰 전환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에서 기 알려드린 폐토사·불연물 허가용량 대비 10% 사전 선별, 기존 보관량 외 임시보관 승인, 매립부담금 전액 면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부여군 초촌면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는 조합 홈페이지(알림광장-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 부여군 초촌면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공고문 1부.

2. 부여군 초촌면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부. 끝.

한국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담당 장 대 규 대 리 오 은 석 사무국장 장 기 석 부이사장 김 상 배 이사장 박 무 흥
협조자

시행 한공조 2019 - 438호 (2019. 11. 11) 접수

우 04508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 13층(만리동1가, SKY1004빌딩)

/ www.krema.kr

전화 02-718-7900

전송 02-718-7171

/

krema@krema.kr

/ 비공개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 11. 08.

부여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부여군 초촌면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총 용 역 비	금6,278,580,000원	입찰개시일시	2019. 11. 12(월), 10:00
도 급 액	금6,278,580,000원	입찰마감일시	2019. 11. 14(수), 10:00
추 정 가 격	금5,707,800,000원	개 찰 일 시	2019. 11. 14(수), 11:00
기 초 금 액	금6,278,580,000원	개 찰 장 소	부여군 입찰 집행관 PC

2. 사업개요

-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나. 위 치 : 부여군 초촌면 금백로 960-14일원
- 다. 용역개요 : 소각대상폐기물처리 21,140톤

3.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나.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사업장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이 있는 업체
- 다. 공동수급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외 사업장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사업장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한 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 가능)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고,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6개사(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5개사이내) 이내로 합니다. 분담비율은 중간처분(소각) **81.48%** 폐기물 수집운반 **18.52%**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으로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 수행에 대한 과업지시서(공기내 월간 최소 처리량 이행 등)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분담비율 변동될 수 있음

아. 공동계약운영요령(회계예규)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를 입찰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정서 제출 마감일 : 2019. 11. 13(수) 18:00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장설명 :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설계서(과업지시서 포함)를 확인하고 소각처리를 위한 폐기물성상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 면밀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 설계서 열람장소 : 우리군 환경과 생활환경팀(041-830-2302)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추정가격 5억원 이상)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0.495%)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당해 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 평가기준금액은 중간처분 4,650,715,440원, 수집운반 1,057,084,560원입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부여군 발주부서(환경과 생활환경팀 041-830-2302)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에 발주부서 확인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입찰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3년간 실적비율로 평가
 - 동등이상용역 : 사업장폐기물 소각처리실적
 - 유사용역 : 사업장폐기물 외의 소각처리실적
-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

6) 기술보유현황 1부(기술인증서 등)

7) 장비보유현황 1부

8)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9)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해당서류

※ 지역업체 참여도는 충청남도 지역 업체 참여 비율로 평가합니다.

※ 공동수급체 평가는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하나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우리군 재무과 경리팀(041-830-2184)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우리군 환경과 생활환경팀(041-830-230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부여군 초촌면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 과 업 지 시 서 >

2 0 1 9. 11.

부 여 군

(환 경 과)

부여군 초촌면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 과 업 지 시 서 >

1. 용역명 : 부여군 초촌면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2. 목 적

부여군 초촌면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3.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120일

※ 다만, 발주기관의 현장여건 등에 따라 기간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4. 과업내용

1) 총용역금액 : 금6,278,580천원 (총액계약)

2) 처 리 량 : 초촌면 방치폐기물 21,140톤(처리량은 변동될 수 있음)

※ 착수 후 1개월 마다 최소 5,700톤이상을 배출하여야 함

3) 용역위치 : 충남 부여군 초촌면 금백로 960-14

5. 용역의 자격

1)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의 **사업장**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이 있는 업체

2) 공동수급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외 사업장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사업장**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한 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 가능)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6개사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5개사이내) 이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으로 하여야 합니다.)

6. 용어의 정의

- 1) 부여군에서 발생하는 소각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부여군수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를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 2) 초촌면 금백로 960-14 일원의 방치폐기물을 “**폐기물**”이라 한다.

7. 폐기물 처리의 범위

- 1) 대상 : 부여군 초촌면 금백로 960-14 일원 폐기물
- 2)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을 처리시설까지 직접 상·하차 장비를 가지고 상차·하차·운반 및 처리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별도의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현지 여건의 긴급성을 감안** 폐기물 소각 처분능력이 1일 **190톤** 이상(공동도급하는 경우 공동도급 업체 전체의 합)으로 월간 최소 **5,700톤** 이상을 처리 하여야 함

8. 폐기물 처리업무수행지침

1) 일반사항

-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하여 처리한다.
-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전에 “**발주기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 및 “**발주기관**”의 지시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 모든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사고발생시 상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착수일로부터 1개월마다 최소 5,700톤이상 반출하여야 하며, 적정 처리치 않을시 관련규정에 의한 제재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 (2) “계약상대자”은 용역계약 기간 중에 비상시 즉시 폐기물처리가 가능 하도록 상시 준비하여야 한다.
- (3) “계약상대자”은 용역 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본 사업장 폐기물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 (4) “계약상대자”은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5) 폐기물은 수집·운반중에 흘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시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6)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이 행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확인을 위한 계약상대자 사업장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7) 왕복 2차로의 주택가 지역에서는 폐기물 운반차량을 저속 운행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8) 부정 계근 발견 시 반출량 산정에서 제외하고 정산한다.
- (9)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10) 매주 차량배차 계획을 “발주기관”에 보고하며, 미배차 시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출 중단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발주부서와 합의하여 별도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1) 폐기물 반출량 계량은 반출차량별로 방치폐기물 사업장내 계량시설 또는 발주부서가 지정한 계량소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량증명서·차량별 계량사진 등 단계별 처리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일체(폐기물 적재 전 공차차량, 폐기물 적재 후 중량, 폐기물운반차량의 차량번호·계근량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계량사진, 폐기물운반차량의 폐기물 반출시간 및 처리장 도착시간에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발주부서가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량과 관련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량 자료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1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과 제반 반출지시 및 행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9. 처리상황 기록 및 전자인계서 작성, 입력 의무

1) 처리상황 기록

- “계약상대자”은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과정별 처리대장을 기록·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관련기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입력 의무

- “계약상대자”은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 인수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Allbaro 시스템)에 “발주기관”과 상호 입력 확인하고 그 처리결과에 의한 최종 처리 수량을 준공수량으로 확정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은 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Allbaro 시스템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10. 과업내용 변경 등

-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과정을 거쳐 지시할 수 있다.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2)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3) 발주기관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 등이 수반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기한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11. 대금지급 방법

- 1) “계약상대자”은 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 신고서 등 제반 서류를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 준공조치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 3) “계약상대자”는 반출일자, 반출량, 차량번호, 처리내역 등을 명시한 폐기물 반입대장을 작성 기록하여야 하며, 위탁처리비 청구시 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처리확인서, 반입대장, 대금청구서 등 관련 제반서류를 준공검사와 함께 청구하고 발주부서는 제출 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및 적정처리 확인 후 처리비용을 입금한다.
- 4) 본 과업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이라도 과다계상 및 부족과업의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한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해당금액을 환불 조치하여야 한다.
- 5) 처리량의 계량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하고 총 합계는 톤 단위로 환산 후 소수점 두 번째 자리를 절사하여 산정한다.
- 6)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량 자료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관리의 위임

- 1) “계약상대자”은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2) “계약상대자”은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하고 상호 협력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야 한다.

13. 계약이행 보증금

“계약상대자”은 본 계약의 확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주기관”에게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치 못하였을 시에는 “발주기관”은 해약할 수 있으며 본 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 한다.

14. 하도급 제한

“계약상대자”은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본 계약사항을 하도급 할 수 없다.

15. 통보사항

“계약상대자”은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 계약의 해지 등

- 1)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특별한 사유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발주기관”에 7일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2) “계약상대자”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
- 3) “계약상대자”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발주기관”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한다. 이때에는 모든 손실·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 처리한다.
- 4)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이라도 “계약상대자”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발주기관”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 ① 발주부서의 정당한 반출요청 및 행정지시에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 ② 계약상대자의 불법 또는 부당한 처리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유사한 처리행위가 적발될 경우
 - ③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 ④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처리물량을 위탁할 수 없을 경우
 - ⑤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거나 “발주기관”이 행하는 폐기물 불법처리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⑥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1개월 마다 최소 5,700톤이상의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⑦ 기타 계약 준수사항 위반하였을 경우

1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행정자치부 예규 용역 계약 일반조건 등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18.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등

- 1) “계약상대자”은 본 계약내역을 완료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반출 및 처리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해 발주부서의 폐기물 처리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3) 손실금액 변상은 “발주기관”이 처리한 비용의 2배로 하고, 변상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4) “계약상대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장비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장비 등의 미비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 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9. 문서의 귀속

“계약상대자”이 계약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등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 등은 “발주기관”에게 귀속한다.

20. 계약의 발생과 소멸

본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처리를 개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 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효력이 자동 소멸한다.

21. 분쟁의 해결 등

-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3)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각 조항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4)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관할법원은 “발주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5) “계약상대자”는 “3)” 및 “4)”에 따른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